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8조제1항)

나.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 변경(안 제25조제1항)

다. 정가 또는 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품목 추가(안 제43조제1항)

라.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70조제3항 중 제5호 및 제6호)

마.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나. 업무규정 표준안[농림부 유통정책과-3374호(2007.7.31)]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주명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인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인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고추, 마, 우엉, 연근, 갓, 취나물, 산나물, 달래, 고사리, 두릅, 고들빼기, 죽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호박고지, 박고지, 콩나물, 깎마늘, 고춧가루, 도토리,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부추, 적겨자, 청겨자, 적근대, 근대, 적치커리, 치커리, 청경채, 파세리, 케일, 뉴그린, 알배기, 신선초, 당귀, 비타민, 비트, 알비트, 레드, 치콘, 샐러리, 양상추, 브로콜리, 레드쉬, 레몬, 적채, 마늘쫑, 열무, 아욱, 돌나물, 참나물, 비름, 쑥갓, 깎토란, 상추, 파프리카, 무순, 새싹, 석류, 망고, 자몽, 체리, 포도(수입), 참다래(키위), 피망, 블루베리, 버섯류

제52조제3항 단서 중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별표 6의 제2조(기능)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시 장 명			
	위 치			
	거 래 품 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산물판매 계획, 자금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신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청	상 호 명	(전화번호 :)		
	참 가 도매시장명	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 법인명		
인	거 래 품 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사 진 2.5cmx3cm (증명판)		매매참가인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 명 (법 인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참가시장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거 래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x3cm) 3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산 지 유 통 인 등 록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참가시장명			
	취급부류 (주품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cm) 3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e-mail)			
	출하 예정 도매 시장			
	취급 부류 (주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절차)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u>	2. <u>주주명부</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u>	4. <u>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절차)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허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내지	제25조(허가절차) ① ----- ----- ----- ----- -----. <u>시장은 법인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u>

제6호에 한 한다.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 증명서

② ~ ⑤ (생 략)

제4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고추, 마, 우엉, 연근,
갓, 취나물, 산나물, 달래,
고사리, 두릅, 고들빼기, 죽
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
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
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
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
차대조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

-----.

1. -----

토란줄기, 호박고지, 박고지, 콩나물, 깎마늘, 고춧가루, 도토리,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부추, 적겨자, 청겨자, 적근대, 근대, 적치커리, 치커리, 청경채, 파세리, 케일, 뉴그린, 알배기, 신선초, 당귀, 비타민, 비트, 알비트, 레드, 치콘, 샐러리, 양상추, 브로콜리, 레드쉬, 레몬, 적채, 마늘쫑, 열무, 아욱, 돌나물, 참나물, 비름, 쑥갓, 깎토란, 상추, 파프리카, 무순, 새싹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52조(판매원표 관리) ①·②
(생략)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석류, 망고, 자몽, 체
리, 포도(수입), 참다래(키
위), 피망, 블루베리, 버섯류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판매원표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 _____ 제37조의3

제4항에 따라 _____

_____.

④·⑤ (생략)

제70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신설>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

④·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 운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규정
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
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조치등을 취할 수 있다.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